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

2024. 6.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권고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7건	2	5		1	473				
1	○ ○ ○ ○ ▽ ▽ 지 ■ ■ 지	과소소소 병가사용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			1	473				
2	★ ★ ▽ ▽ 지 ■ ■ 지 ◎ ◎ 지	과소소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3	♠ ♠ ♠ ♠ ▽ ▽ 지 ■ ■ 지 ◎ ◎ 지	과소소소 신용카드 관련 업무 부적정	1								
4	♠ ♠ ♠ ♠ ▽ ▽ 지 ■ ■ 지 ◎ ◎ 지	과소소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1							
5	♠ ♠ ♠ ♠ ■ ■ 지 ■ ■ 지	과소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							
6	★ ★ ◆ ◆ ◆ ◆ ▽ ▽ 지 ■ ■ 지 ◎ ◎ 지	과과소소소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1							
7	▽ ▽ 지 ■ ■ 지 ◎ ◎ 지	소소소소 항체형성률 확인 검사 소홀		1							

2. 처분요구일람표

1.	병가사용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	1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3.	신용카드 관련 업무 부적정 (시정).....	8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주의).....	11
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주의).....	15
6.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주의)	17
7.	○○○ ○○ 항체형성률 확인 검사 소홀 (주의)	1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병가사용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동물위생시험소
관 계 부 서 ○○○○과, ▽▽지소, ■■■지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에 의하면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또한 같은 규정 제7조의5(병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보고, 45일 초과는 2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일을 초과한 병가 사용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으로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 사용기간을 해당 연가일수에서 미공제 또는 착오 계산하여 4명의 연가보상비 472,98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병가 사용 시 연가일수 미공제내역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472,980원은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과,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에서는 각종 행사와 시책 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1조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항목을 구분하되,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부서에서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을 기재하여 최소 매 분기마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했어야 했다.

그런데, ♣♣♣♣♣♣♣♣ ▽▽지소 등 3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 후 1개월 내 공개하지 않았다.

[표 1] 업무추진비 미공개 대상기간내역

-내용 생략-

2.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의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기관·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2021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총 8건, 2,580,440원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을 결재 받아 관리하지 않았다.

[표 2]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내역

-내용 생략-

3.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 의하여 예산편성 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업무추진 제압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 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민원인용 커피 등 구입 및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제공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민원인용 커피 등 구입 및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제공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19건의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표 3]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내역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관련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과,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1.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하나, 감사대상 기간 중 ♣♣♣♣♣♣♣♣♠♠♠♠과에서 법인카드 포인트를 단 1회(2022.12.16., 145,000원) 세입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과 등 4개 부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정하게 세입 조치하지 않아 2024.05.08.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1,445,489원이 적립되어 있다.

[표 1] 신용카드 포인트 현황

-내용 생략-

2.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의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를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을 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지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지소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지출)을 해야 하고,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 ■■지소에서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의한 지출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후 수시로 지출을 하였고, 법인카드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액 검사를 실시 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결제 예정금액을 제외한 173,720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표 2] 신용카드 결제계좌 현황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포인트 1,445,489원을 세입 조치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부족한 잔액 173,720원을 입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과,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1. 업무 개요

♣♣♣♣♣♣♣♣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2021.12.31.까지는 제76조)에
따르면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훈령 제63조(2021.12.31.까지는 제77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현금을 받으면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일치가 되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금이 있을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관리 부적정

그러나 ♣♣♣♣♣♣♣♣ 본원에서는 2021년 12.29.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3.18.~4.6. 기간 동안 총 20일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불일치 하였다.

2023년에는 7.12.~8.9., 8.18.~9.7., 9.20.~10.9., 10.20.~11.9., 11.20.~12.7., 12.18.~12.27.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1.15.~2.14., 2.20.~3.29.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의 잔액이 불일치하였다.

♣♣♣♣♣♣♣♣ ▽▽지소에는 2021년 하반기 동안 9.17.~9.30., 10.20.~10.28., 11.19.~11.30., 12.20.~12.30.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1.20.~1.27., 2.18.~2.27., 3.8.~3.27., 3.31.~7.27., 8.19.~8.30., 9.20., 10.20.~10.26., 11.9., 11.18.~11.23.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다.

2023년에는 1.20.~6.4., 6.30.~7.3., 7.31.~8.7., 8.17.~8.31., 10.17., 10.20.~10.31., 11.20.~12.7.,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1.31.~3.29.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다.

♣♣♣♣♣♣♣ ■■지소에는 2021년 하반기 동안 9.7., 9.17.~9.26., 9.29.~9.30., 11.19.~12.27.,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1.20.~1.27., 1.31.~8.9. 8.19.~8.30., 9.20.~10.6., 10.11.~12.30.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 하였다.

아울러 2023년에는 5.19.~5.30.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다.

♣♣♣♣♣♣♣ ◎◎지소에는 2021년 하반기 동안 9.27.~10.11., 12.3.~12.9.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3.10., 4.4.~4.5.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잔액이 세입 세출외현금 통장과 불일치하였고

2023년에는 7.24., 9.20.~10.5.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1.19.~3.29.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잔액이 불일치하였다.

나. 세입세출외현금 이월 부적정

한편, ♣♣♣♣♣♣♣ 본원을 비롯한 ▽▽, ■■, ◎◎지소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등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지소

내 용

경상북도 ♡♡♡♡♡에서는 행정활동수행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인 공공운영비를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되어 있고, 그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 등은 시설비(401-01)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개발비(207-01)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의 경우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을 ‘AAA A,AA AAAA 사업’ 등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 및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공사와 ‘♣♣♣♣♣♣♣ BBBB 용역’에 각 사업별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과, ◆◆◆◆과,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경상북도 ♣♣♣♣♣♣♣♣에서는 가축방역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하여 채용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에서는 채용 공고 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시험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등의 중요사항들을 구직자가 알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19조에서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채용방법과 절차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공고시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중요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전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 기관에서는 「경상북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24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12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채용공고 시 중요사항인 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을 공고내용에서 누락하였으며,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024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항체형성률 확인 검사 소홀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지소, ■■지소, ◎◎지소
내 용

경상북도 ♣♣♣♣♣♣♣♣(▽▽지소, ■■지소, ◎◎지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 혈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 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가축별 일정비율¹⁾ 미만일 경우 혈청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항체형성률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가축별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법정기한 내에 실시하여 구제역 조기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지소에서는 [표]와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3건의 ○○○ ○○ 항체형성률 기준미달 농가에 대하여 확인 검사 시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최대

1)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

33일을 지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항체형성률 확인검사 지연실시 현황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등을 위반하여
확인검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